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9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 박대출·강대식·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워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유영하·유용원 윤상현·윤영석·윤재옥 윤한홍·이달희·이만희 이상휘·이성권·이종박 이인선·이종배·이종욱 이철규·이현승·인요한 임이자·임종득·장동혁 정동만·정성국·정연욱 정점식·정희용·조경태 조배숙·조승환·조은희 조정훈·조지연·주진우 주호영·진종오·최보윤 최수진·최은석·최형두 의원(10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3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 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 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 1호·제2호·제2호의2·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제2절(제87조의3), 제3절(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제4절(제87조의6부터 제87조의18까지), 제5절(제87조의19 및 제87조의20), 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및 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이 조 제1항제4호를"을 "제4호를"로 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 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 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서"를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 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 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D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4조제9항 중 "제94조제1항 제4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 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 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14조의 2, 제116조 및 제117조를"을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뒤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 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 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 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 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 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5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 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 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 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 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 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 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 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 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

- 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 자에게 증여한 경우
-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 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 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 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항 제2호의2 및"을 "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장 제4절(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를 "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반기"를 "반기(半期)"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제127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 앞의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 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 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이 요청하는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5제6항을 삭제한다.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을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다.

④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호의2 중 "양

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으로 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를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를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를 "이자소득·배당소득에"로, "율을"을 "어느 하나의 율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2조의2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항 제2호의2 또는"을 "항"으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 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3항 본문 중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제4조(소득의 구분) ①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종합소득	1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u>제2호, 제2호의2</u> 및	<u> </u>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	
득을 합산한 것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금융투자소득	<u><</u>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소득의 구분) ① (생 략)	제4조(소득의 구분) ① (현행과 같
	승)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②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	
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	
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한다.

- 1. (생략)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 호에 따른 <u>투자신탁</u>. <u>다만</u>,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 3. (생략)
- ③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 2. (생략)
 -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 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3. ~ 11. (생 략)
 -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u>.</u>
1. (현행과 같음)
2
<u>투자신탁(제17조제1</u>
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로 한정한다) <단서 삭제>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6조(이자소득) ①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11. (현행과 같음)
12. <u>제1호</u>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 ③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 5. (생 략) <신 설>

- 6. ~ 8. (생략)
- 9. <u>제1호</u>, 제2호, 제2호의2 및 제 <u>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u>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13. <u>제1호</u>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7조(배당소득) ①
•
· 1. ~ 5. (현행과 같음)
•
·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 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 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 부터의 이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 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 부터의 이익 6. ~ 8. (현행과 같음)

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 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 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② ~ ⑥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팀 개정법률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 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 27. (생 략)
- ② ~ ⑤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_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
의2 및 제6호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세21조(기타소득) ①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
<u> </u>
1.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법률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 의 계산 특례) ① ----- 제16 6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2호 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5호 -

의2 ·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 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 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 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 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 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 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제7항제 3호 ·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 환·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 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 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

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 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 ③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절 정의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 | <삭 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 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 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

② • ③ (현행과 같음)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 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 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 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 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 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 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 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달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에 해당하는 부분

나. 채권등의 상환

다.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 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개정법률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 신탁의 이익
-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u><삭</u>제>

개정법률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 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 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 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
 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
 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u>인 것</u>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 개정법률

<삭 제>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거나 제87조의25 에 따라 결정 · 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 일 것

-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 소득 기본공제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 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 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 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 (이하 "분리과세금융투자소 득"이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 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 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 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계산한다.

-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금융 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 19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제1 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 세액에서 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제87조의20 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 우로 한정한다)하여 계산
- 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제 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 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를 더하여 계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 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 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 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 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 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 한 이익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개정법률

<삭 제>

의 이익

-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 로 발생하는 소득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① <삭 제>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 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 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 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 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 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 액으로 한다.

-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 투자결손금"이라 한다.
-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 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① 주 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 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이하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 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 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② 주식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① 채 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 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이하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 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 요경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② 채권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 <삭 제> 액) 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 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투 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 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 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구 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11(주식등・채권등・투 | 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 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 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 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 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에 따르며 제96조제3항을 준 <u>용</u>한다.

개정법률

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 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 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 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 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 액
-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 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 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 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 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 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 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 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 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으로 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 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 <삭 제> 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 채권 등 •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 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 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 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 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 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에 대하 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 비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 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 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 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

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 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이라 한다)
-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 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 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 용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 <삭 제> 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

도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 생한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 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38조제6항에 따 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 다.

③ 삭제

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의 구 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 | 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

개정법률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_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 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 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 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 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 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 · 환매 · 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 익을 포함한다.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구 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① | <삭 제> 파생상품소득금액(제87조의6제 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 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 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②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구체적 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법률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 (上場)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 용하여 평가한 가액
- 3.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 ·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② 기준시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법률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 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 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 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 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 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 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 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 한 소득금액
-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 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 한 소득금액

- 라.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 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 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 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금액
-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 액에서 공제할 금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 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 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 <삭 제> 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 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삭 제> 감면)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 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 특례제한법 | 에서 금융투자소 득세의 감면을 금융투자소득금 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 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 개정법률

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 투자소득세액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법률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 | <삭 제>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 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 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 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 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 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u><삭</u>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 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 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 | <삭 제> 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 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 (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 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 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 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 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 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 <삭 제> 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 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 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 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 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 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개정법률

<삭 제>

-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 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 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 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 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 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 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 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지 아니 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 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 는 제외한다.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 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 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 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 외한다.

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 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 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 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거 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

개정법률

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 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 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 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 | 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 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 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때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 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 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 등 다른 법률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 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 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법률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징수·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 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 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 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 는 세액을 징수한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 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 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 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 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

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 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 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 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 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 른 확정신고납부세액

-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 른 수시부과세액
-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개정법률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 | <삭 제> 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57조의2, 제6 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 77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 다.

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 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은 "1년"으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제88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ㅣ 제ㅣ 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1. (현행과 같음)
- 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

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 | 탁증권을 포함한다. 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 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 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 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 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5. ~ 10. (생략) 개정법률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 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 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 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 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③ (생 략)

-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 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 10.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의 계산) ① -----

----- 종합 소득 및 퇴직소득-----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신 설>

- 1. 2. (현행과 같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 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 하는 주식등
 -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 장"이라 한다)에서의 거 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 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 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 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 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 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 한다.

4. (생략) <신 설>

- 6. (생략)
- ②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 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신 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4. (현행과 같음)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 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 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 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 다)
- 6.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호를 -----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 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신 설>

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 ·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 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 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 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 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 주인수권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6. (생략) <신 설>

8. (생략)

② ~ ⑥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 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산 등) ①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 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 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신 설>

<u><신</u>설>

4. (생략)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 가한 가액

- 6. (현행과 같음)
-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 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 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8.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 득
-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 득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 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 다.
 - 1. (생략)

<신 설>

<신 설>

4. (생략)

②·③ (생 략)

개정법률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 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 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 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2	(현행과	같음	+)			
법률	제1775	7호	소득	세법	일부	<u>_</u>
개정	법률					
제103	조(양도	소득	기본	공제)	1 -	_
						_
						_

- 1. (현행과 같음)
-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 득
-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 득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 ,,	
제104조(양도소득/	세의 세율) ① -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 로 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______

- 1. ~ 10. (현행과 같음)
-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 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 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 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제표준	세율		
3억원 이하	래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1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u>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u> <u>하는 주식등</u>
 -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

<신 설>

<신 설>

- 14. (생략)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 1. ~ 3. (생략)
- ③ ~ ⑤ (생 략)

<신 설>

의 1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 른 자산
 - <u>가. 중소기업의 주식등</u> <u>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u> 분의 10
 - <u>나. 그 밖의 주식등</u> <u>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u> 분의 20
-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

 의 20
- 14. (현행과 같음)
- ② <u>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u> 호가목------------
- -----.
- 1. ~ 3.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7)·⑧ (생 략)

개정법률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 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 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생략)

<신 설>

3. (생략)

②·③ (생 략)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7) · (8)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 ① ----- 각 호(같 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 5호는 제외한다)에서 -----

- 1. (현행과 같음)
-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 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3.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 산) ① (생 략)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 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 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 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 2. (생략)

<신 설>

4. (생략)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 산) ①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교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교하는 자산의 양도소독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교한 예정신교 산출세액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제 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⑧ (생 략)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 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등 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 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 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 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 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 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제114조(양도소늑과세표순과 세
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⑧ (현행과 같음)
9
<u>제94</u>
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
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
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
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

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 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 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 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 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 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계 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제27조·제3 3조·제39조·제43조·제44조 ·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신 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 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준용규정) <u>①</u>
.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
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
<u>다.</u>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
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 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 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 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 하다.

개정법률

<신 설>

개정법률

<신 설>

	<u>제11</u> 4	<u> </u> 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끼	가 지의	규
<u>정을</u>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 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 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 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 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 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
 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
 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
 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 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 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u><신 설></u>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 라 계산한다.

-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 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 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 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 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한다)으로 한다.

개정법률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 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 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 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 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

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 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 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

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 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 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 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 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 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
 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
 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개정법률

<신 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 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 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 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u>과세되는 경</u>우에는 산출세액에 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 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 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

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
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
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 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 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 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 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 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 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 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 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 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

③ 제1항에 따라 납무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 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 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 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

우

-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 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 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을 상속받은 경우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 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 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 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 급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 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 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개정법률

<신 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2호의 및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

양도소	득세에	관7	하여	는	제90	조,
제92조	제3항,	제1	.023	<u> </u> 소제2	2항,	제
114조,	제116	조	및	제1	17조	:의
규정을	준용한	<u> </u> .				
(n) = 0	コスラブ	1 그	. 1) <i>Z</i>	ر د کا ا	드 제	-1)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日芒	세11101호 고	7 711 11	已丁
개정	법률		
레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	l 천소
득)			
1.			
_			
_			
_		항 -	
_			
_			
_			
_			
_			
	가.・나. (현행과		
2			

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 득

-----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 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 의 이익

<삭 제>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 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 른 소득은 제외한다)

<삭 제>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삭 제>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이익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 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익

<삭 제>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 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 된 금액

<삭 제>

3. ~ 12. (생략)

3. ~ 12.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4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관한 과세 특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 세의무)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 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 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 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 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 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 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 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개정법률

<<u>삭 제></u>

개정법률

<u><</u>삭 제>

있다.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 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제94조제1항제4호다 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 (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 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계산한다.
- 1.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87조의 12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③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 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 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 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 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 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 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 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 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 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개정법률

<삭 제>

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 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법률

제126조의6(조정공제) ① 국외전 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26조 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 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 | <삭 제>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 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 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 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 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제12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 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 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하는 경우
-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26조 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 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 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 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 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 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 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 | <삭 제> 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 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 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 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 준으로 작성한다.
- ②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 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출국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 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 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 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 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 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 다.

-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⑤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 정공제, 제126조의7제1항에 따 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26 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126조의10(납부유예) ① 국외전 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 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국외전출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 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제를 납부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

한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법률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 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 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 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 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 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 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 우
-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 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을 상속받은 경우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 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 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 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26조의9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 급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 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 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 <삭 제> 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 의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개정법률

제87조의26, 제90조, 제92조제3 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 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1. ~ 8. (생 략)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 ② ~ ⑥ (생 략)
-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 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병	법률		
제127	'조(원천징수	의무) ① -	
		<u>제3호</u> -	
		•	
1.	~ 8. (현행3	과 같음)	
<스	<u> </u>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부터 <u>제7항</u>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⑨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 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 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 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

<u>외한다)</u>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 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u>반기</u>의 마지막 달의 다 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 3.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 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 8. (생략)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②・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

반기(半期)
 1.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1123고(한한 6 개발/ 호
<u>.</u>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③ (현행과 같음)
4
제127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

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 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 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 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 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 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 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 1. ~ 2. (생략)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u>다음 각 호의</u> <u>구분에 따른</u> 금액(이하 이 조에 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 1. (생략)
- 2. (생략)
- ⑦ ~ ⑧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1항제2호
<u>.</u>

- 1. ~ 2. (현행과 같음)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127조제1항 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 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u><삭 제></u>

<u><삭 제></u>

⑦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법률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 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 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 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 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 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 까지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 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u>삭 제></u>

개정법률

<삭 제>

투자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 원 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 수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 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 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 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 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 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 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

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 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 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등 금 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 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 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 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

개정법률

<삭 제>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 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 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 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 으로 본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 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 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 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법률	제17757호	호 소득	·세법	일부	_
개정병	법률				
제155	조의2(특정	성금전신	<u></u>]탁 등	의 원]
천기	징수의 특례	引)			_
					_
					-
					-
1. ((현행과 같	음)			
<스	<u> 제></u>				

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항제 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 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 할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 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 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 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 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 세법 1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 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 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 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 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 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 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 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 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 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 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 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 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 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 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 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 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 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 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 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 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 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 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 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 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 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8. (생 략)
- 9. 금융투자소득
- ② ~ ①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 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한 다.

1.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 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 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① (현행과 같음)

개정법률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_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 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 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 2.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의6 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 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 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 관할 것
- ②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 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부과에 필요한 자료
-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 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후 단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 청할 수 있다.
- ④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